

표지어음특약

제1조(어음의 발행 및 보관) 표지어음은 표지어음보관통장을 발행교부하며, 어음실물발행은 생략한다.
다만, 자금중개주식회사를 통하여 매출(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함)하는 경우 또는 어음의 만기 1영업일 전에는 어음실물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2조(원천징수)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세금은 어음을 교부할 때, 만기상환시 또는 중도상환시에 원천징수한다.

제3조(지급) ①표지어음은 지급기일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 때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한다.
②거래처가 표지어음을 보관하고 지급기일까지 인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거래처가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 결제대전을 입금한다.

제4조(지급기일 경과후 이자) 표지어음의 지급기일 경과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지급기일전 지급) 표지어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일전에도 지급한다. 이때는 원금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
제6조(매매·양도 등) 상호저축은행에 보관된 표지어음은 상호저축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.

제7조(적용법률) 표지어음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음법을 적용한다.